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시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명확히 규정〉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6454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시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명확히 규정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제출
2. 제안연월일 : 2024. 12. 12.
3. 회부연월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 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일시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명확히 규정

현행	개정안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u>일시 휴업</u> 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 등) ① ----- ----- <u>30일 이</u> <u>상 휴업</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휴업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일시 휴업’이라는 표현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 16조).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유효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국내에서 외국법령, 조약,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을 일컬음.¹⁾

1)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시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시 휴업’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며칠 또는 하루 이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음.²⁾

개정안은 위와 같은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 휴업’이라는 표현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 의무의 기준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즉, 단기 휴업(30일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실질적인 휴업이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30일 이상)에 한하여 행정적 관리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한편, 현행법은 휴업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휴업 신고 의무 규정을 두는 이유는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등록 및 관리주체로서 휴업 신고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상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② 정부 등에서 영업 중인 외국법자문사의 수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할 때 등록 현황이 유일한 자료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휴업 신고가 누락되면 시장 분석이나 통계 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③ 그 밖에 신고를 통해 휴업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신뢰 유지와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개정안은 휴업 신고 대상을 30일 이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병가, 여행, 출장 등 단기 사유로 인한 중단 시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없애 업무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만, 개정안으로 인해 30일 미만 휴업은 ‘비공식’ 휴업 상태로 방치된다는 점, 이를테면 29일간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휴업 상태가 아니므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중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부 관리·통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단기 휴업의 특성상 행정적·실무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또는 추후에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의료법」³⁾, 「수의사법」⁴⁾, 「공인중개사법」⁵⁾, 「행정사법」⁶⁾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3)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수의사법」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6) 「행정사법」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은 규율 필요성이 낮고, 신고 의무 면제를 통해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상태 유지는 직무 수행의 필수조건이며, 29일 이하의 휴업이라도 신고 없이 허용할 경우 의뢰인의 피해 발생,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 공백, 등록제도의 근거 약화 등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이 주장하는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